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할 때에는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)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)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3. 시 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시 투자기관의 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)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
2. 주민등록 등본
3. 장애인수첩 사본

제5조(우선계약) 시장 또는 시 투자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한다.

제6조(사업의 의무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,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사용료등)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미 계약된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.

○委員長 崔 浩 委員님들, 아까 얘기했던 보라매病院酬價條例案은 本 常任委員會에 上程을 하지 말고, 안해도 法的인 瑕疵는 없습니다. 하지를 말고 아까 內容을 얘기했습니다만 調整된 후에 다음 會期에 上程을 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 지금 上程할 필요없이.

李汪烈委員님.

○李汪烈委員 李汪烈委員입니다.

그런데 이것이 上程 안하고 또 問題가 어떤 것이 있고, 또 上程해서 우리 今會期에 通過를 시켜줘야 來年 1月 1日부터.....

○委員長 崔 浩 그것은 안 됩니다. 지금